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,796명 중 80.9%(9,543명)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·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“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”에서 “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”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

## 3. 주요내용

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(안 제74조제7항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○○○○. ○. ○. ~ ○. ○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7항 본문 중 “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”를 “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⑦ 사용자 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<u>36주</u>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. 다만,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 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.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⑦ ----- ----- <u>32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71